도로점용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	처리기간	뒤쪽 참조		
	성명(법인의	경우는 그 명칭 및	대표자 성명)			록번호 !등록번호 또	는 법인등록번호	ᡓ)	
신청인	주소(법인의	경우는 주된 사무소	전자우	편					
	전화번호				휴대전	화번호			
신청내용	도로의 종류			노선번호 (노선명)	()		
	①점용의 목적								
	②점용의 장	소 및 면적							
	점용기간			굴착기간					
	점용물의 구조								
	③공사의 방법								
	공사의 시기								
	4도로의 복	구방법							

「도로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도로관리청 귀하

첨부서류	1. 설계도면(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). 다만,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	⑤수수료
	로 한정합니다)는 제외합니다.	
	2.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	1,000원
	가.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[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	또는 행정청이
	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	속하는 지방
	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에 따라	자치단체의
	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는 제외합니다]	조례로
	나.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(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	정하는 금액
	로 한정합니다)	
	다.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・조정 결과를 반영	
	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	

유의사항

근거 법률

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(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).

- 1.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, 변상금이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).
- 2.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제1호).
- 3.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 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).
- 4.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1. ①에는 휴게소, 주유소, 공장, 아파트,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.

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 및 구(읍

접수

도로관리청

면 · 동)

 \rightarrow

신청서 작성

신청인

- 2.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.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 합니다. 다만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.
- 3.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(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)을 적습니다.
- 4.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(허가자) 복구로 적습니다.
- 5.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,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 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.

그 그대도 중에는 중단에 떠답기다.									
처리기간									
점용의 구분	특별시			광역시 및 도			국토교통부		
	접수	처리	기간	접수	처리	기간	접수	처리	기간
도로의 일반점용	동	구	5일 (3일)	구・읍・면	시・군	5일 (3일)			7일 (5일)
도로의 일시점용	동	시	2일	구ㆍ시ㆍ읍ㆍ면	구ㆍ시ㆍ읍ㆍ면	2일	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	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	7일 (5일)
아치 및 육교 사용	시	시	4일 (3일)	시・군	시・군	4일 (3일)			7일 (3일)
공작물의 설치	구	구	10일 (5일)	구・시・군	시・도	8일 (5일)			7일 (5일)
도로의 굴착	구	구	10일 (5일)	구・시・군	구・시・군	5일 (3일)			7일 (5일)
1.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, 그 처리기간은 비고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. 2. ()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(경찰서)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.									
신청안내 및 처리절차									
1. 고속국도: 한국도로공 2. 일반국도: 국토관리사 3. 특별시도·광역시도· 군도 및 구도: 특별시·				:리사무소 도・지방도・4			1. 고속국도: 도로과 2. 일반국도: 보수과 3. 특별시도·광역시도·지방도·시도·		

검토

도로관리청

 \rightarrow

격재

도로관리청

군도 및 구도: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

허가증 발급

도로관리청